

속 초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공  보

제916호 2015년 1월 23일(금)

공 고

- 속초시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8

회 란									
-----	--	--	--	--	--	--	--	--	--

발행 : 기 획 감 사 실 (전화 : 639-2223, FAX : 639-2106)

「속초시 수입증지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속초시 법무 행정사무 처리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입법예고기간 : 2015. 1. 23.~ 2. 12.(20일간)

2015년 1 월 23 일

속 초 시 장

속초시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의 수입증지 등 각종 수수료 납부제도 개선」 권고와 행정자치부 「민원수수료의 종이수입증지 사용폐지방안」에 따라 종이 수입증지를 폐지하여 전자수입증지로 전환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함(안 제2조)
- 나. 전자수입증지에 의한 납부방법을 규정함(안 제3조)
- 다. 전자수입증지의 사용(안 제4조)
- 라. 전자수입증지 관리대장은 5년간 보존하도록 함(안 제6조)
- 마. 수입증지의 환매방법을 규정함(안 제8조)
- 바. 수입증지에 관한 폐기 경과조치(안 부칙 제2조)
- 사. 별지서식을 규정함(안 별지서식 1, 2)

3. 의견제출

- 가.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5년 2월 12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참조 : 세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명) 주소·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의견제출할 곳 : 우217-030/ 속초시 중앙로 183(중앙동 469-6)
속초시청 세무과 세무행정담당
(전화: 033-639-2163, FAX: 033-631-0778)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시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속초시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속초시수입증지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속초시 수입증지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 수입증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속초시 수입증지"(이하 "증지"라 한다)란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역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시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2. "전자수입증지"란 인증기, 무인민원발급기 및 각종 제증명발급기 등을 통해 전자영수증 증빙형태로 발행하는 수입증지를 말한다.

제3조(전자수입증지에 의한 납부) ① 시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관계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시에서 발행하는 전자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수수료의 징수 대상 및 요율은 「속초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별표 1, 별표 2에 따라 징수한다.

제4조(전자수입증지의 사용) ① 전자수입증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히 표시되도록 인영하여야 한다.

1. 전자수입증지의 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계기고유번호

②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사용부서의 장을 관리책임자로 지정하고, 사용부서에서는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계기고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시 공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전자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 전자이미지화한 전자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하고, 모양은 시를 상징하는 도안으로 한다.

제6조(전자수입증지 사용에 의한 수납금 납입 등) ① 제3조에 따른 현금 수납금은 금고 소재지에서는 그 다음날까지, 그 외의 곳에서는 5일 안에 시 금고에 납입하고, 신용카드로 납부된 수납금은 신용카드결제 대행업체에서 시 금고에 납입한다.

② 전자수입증지 수납금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일일결산 하여야 하며, 관리 대장은 5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결산처리 하는 경우에는 출력자료에 의거 일일 결산할 수 있다.

③ 전자수입증지 발급기의 고장 및 취급부주의 등으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결손" 소인을 하되, 소인된 면을 복사 첨부하여 일일전표 금액과 결손된 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7조(변상책임 등) 전자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납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 책임 등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른다.

제8조(수입증지의 환매) ① 사용하고 남은 증지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증지 관리책임자에게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오손 또는 훼손되어 환매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매가격은 청구인에게 매수금액으로 환매하여야 하고, 10원 미만의 금액은 계산하지 않는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입증지 환매청구서는 관련 자료와 함께 5년간 보관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입증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조례에 따라 제작·보관 중인 증지는 모두 폐기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전자수입증지발행 관리대장(제3조제2항 관련)

행정기관명 :
담당부서명 :
기기 번호 :
정산 일자 : 년 월 일

결 재	주무관	담 당	실·과·소·동장

[단위 : 원]

	구 분	금일 발행		금일 결손		수수료 금액	
	증지금액	매수 (A)	금액 (B)	매수 (C)	금액 (D)	매수 (E) (A-C)	금액 (F) (B-D)
일 계							
	계						
누 계							
	계						

【별지 제2호 서식】

수 입 증 지 환 매 청 구 서(제3조제2항 관련)

성명			
주소			
사유			
환매금액		액면금액	
내역			
종별	수량	액면금액	환매금액

위와 같이 수입증지를 환매 청구합니다.

20 . . .

청구인 인

속초시장 귀하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철거·멸실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하고 건축물대장상 소유자에게 말소사항을 통지하여야 하나, 주소불명으로 통지가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 01. 23.

속 초 시 장

1. 공고(의견제출)기간 : 2015. 01. 23. ~ 2015. 02. 06. (14일간)
2. 공고장소 : 속초시 게시판 및 홈페이지,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직권말소일 : 2015. 01. 22.
4. 공시송달 내용

가. 처분의 제목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나. 당사자	성명(명칭)	1. 류보배(교동 767번지) 2. 윤용길(교동 7/3)	
다. 처분의 원인된 사실		건축물의 철거·멸실	
라.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위치	강원도 속초시 교동 767번지
		건축물 현 황	1. 목조, 슬레이트지붕, 주택 지상1층 27.9㎡ 2. 목조, 초가지붕, 주택 지상1층 37.35㎡
마. 법적근거 및 조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3항	

5. 기타 사항

가.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속초시 건축디자인과(☎033-639-276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